

관리번호

-

(년 귀속)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① 기본사항

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	-
③ 주 소		
④ 납세지		
⑤ 신고구분	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	⑥ 전화번호
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⑦ 은행명	⑧ 계좌번호
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③ 세무 대리인	⑨ 성명	⑩ 사업자등록번호	⑪ 전화번호
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	--------

④ 퇴직 소득 명세	⑫ 지급처명	⑭ 입사일	⑯ 지급일	⑮ 퇴직급여	⑰ 비과세 퇴직급여	⑱ 과세대상 퇴직급여
	⑬ 사업자등록번호	⑮ 퇴사일	⑰ 근속월수			
	합 계					

⑤ 근속연수계산	②1 제외월수	②2 가산월수	②3 중복월수	②4 정산근속 연수	②5 2012.12.31. 이전 근속연수	②6 2013.1.1.이후 근속연수(②4-②5)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계 산 내 용		금 액	
			②7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②7	
	환산산출세액(②7× 세율)		②8	
	산출세액(②8× 정산근속연수/12배)		②9	
	세액공제		③9	
	가산세	무(과소)신고	④0	
		납부(환급)지연	④1	
		합계(④0+④1)	④2	
	기납부 세액		④3	
	납부할 총세액(②9-③9+④2-④3)		④4	
	분납할 세액		④5	
	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④4-④5)		④6	

⑦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

(※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)

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계 산 내 용		금 액		
			②7	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②7		
	환산산출세액(②7× 세율)		②8		
	산출세액(②8× 정산근속연수/12)		②9	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		③0		
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	계 산 내 용			2012.12.31. 이전	2013.1.1. 이후
					합계
	과세표준안분(③0× 각근속연수/정산근속연수)		③1		
	연평균과세표준(③1/각근속연수)		③2		
	환산과세표준(③2× 5)		③3		
	환산산출세액(③3× 세율)		③4		
	연평균산출세액(2012.12.31.이전: ③2× 세율, 13.1.1.이후: ③4/5)		③5		
	산출세액(③5× 각 근속연수)		③6		

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	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	㉟	
	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(㉞× 퇴직연도별 비율) + [㉟× (100%-퇴직연도별 비율)]		㊱	
	세액공제		㊲	
	가산세	무(과소)신고	㊳	
		납부(환급)지연	㊴	
		합계(㊳+㊴)	㊵	
	기납부 세액		㊶	
납부할 총세액(㊱-㊲+㊵-㊶)			㊷	
분납할 세액			㊸	
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(㊷-㊸)			㊹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접 수 증(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)				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서 부표(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) 1부			접수번호
	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.
- ④ 납세지란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(이하 “주소지등”이라 합니다)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- ② 환급금 계좌신고(⑦·⑧)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- ③ 세무대리인(⑨~⑪)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④ 퇴직소득명세(⑫~⑳)란: ⑱ 퇴직급여란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.
- ⑤ 근속연수계산(㉑~㉓)란: $[근속연수 = (\text{총근속월수} - \text{중복월수}) / 12]$ 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. 다만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,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.
- ⑦ 2016~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㉗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서식 ㉓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
 - 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서식 ㉙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- ㉚ 환산산출세액란: ㉗ 퇴직소득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 - ㉛ 과세표준안분란: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. 12. 31. 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. 1. 1.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.
 - ㉜ 환산과세표준과 ㉝ 환산산출세액란: 2013. 1. 1.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.
 - ㉞ 연평균산출세액란: 2012. 12. 31. 이전 부분은 ㉚ 연평균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, 2013. 1. 1. 이후 부분은 ㉜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
 - ㉟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: $(㉚ \times \text{퇴직연도별 비율}) + [㉞ \times (100\% - \text{퇴직연도별 비율})]$ 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, ㉟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.

구분 \ 퇴직연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퇴직연도별 비율	20%	40%	60%	80%
 - ㊱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」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「소득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㊲ 가산세란: ㉟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㉟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 - ㊳ 기납부 세액란: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.
 - ㊴ 분납할 세액란: ㉟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,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-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,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귀속년도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2021년~2022년		귀속년도	2023년부터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과세표준			과세표준			과세표준		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